

한화포레나 충주호암 입주자모집공고

[모집공고일:2024. 09. 12. (목)]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충주시 거주자		충청북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 09. 12. (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등급 등의 판단기준임)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령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충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중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법, 갑론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 09. 23. (월)	2024. 09. 24. (화)	2024. 09. 25. (수)	2024. 10. 02. (수)	2024. 10. 04. (금)~ 2024. 10. 07. (월)	2024. 10. 14. (월)~ 2024. 10. 16. (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물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물주택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1264)		

- ※ 고흥장,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물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충청북도 충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I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건축호 - 39966호(2024. 09. 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193-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층 8개동 총 847세대 중 일반분양 1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86세대(기관추천 17세대, 다자녀가구 17세대, 신혼부부 31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듈	주최형 (조달방식/종)	약신평가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면적기준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소충족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492	01	045.8562	45	45.8562	14.7783	60.6345	36.5491	97.1836	24.7855	56	5	5	10	2	5	27	29	8
	02	059.9378	59	59.9378	19.7112	79.6490	47.7727	127.4217	32.5580	117	12	12	21	3	11	59	58	18
	합 계										173	17	17	31	5	16	86	87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다자녀	건축비	부가세	계	1회차 (5백만원)	2회차 (2천여계약금)	1회차 (10%)	2회차 (10%)	3회차 (10%)	4회차 (10%)	5회차 (10%)	6회차 (10%)	
45	1층	4	83.812.305	207.911.695	-	291.724.000	5.000.000	24.172.400	29.172.400	29.172.400	29.172.400	29.172.400	29.172.400	29.172.400	87.517.200
	2층	8	85.595.576	212.335.424	-	297.931.000	5.000.000	24.793.100	29.793.100	29.793.100	29.793.100	29.793.100	29.793.100	29.793.100	88.379.300
	3층	8	87.378.847	216.759.153	-	304.138.000	5.000.000	25.413.800	30.413.800	30.413.800	30.413.800	30.413.800	30.413.800	30.413.800	91.241.400
	4층이상	36	89.182.119	221.182.881	-	310.345.000	5.000.000	26.034.500	31.034.500	31.034.500	31.034.500	31.034.500	31.034.500	31.034.500	93.103.500
59	1층	7	110.095.371	273.111.629	-	383.207.000	5.000.000	33.320.700	38.320.700	38.320.700	38.320.700	38.320.700	38.320.700	38.320.700	114.962.100
	2층	17	112.437.728	278.922.272	-	391.360.000	5.000.000	34.136.000	39.136.000	39.136.000	39.136.000	39.136.000	39.136.000	39.136.000	117.498.000
	3층	18	114.780.372	284.733.628	-	398.514.000	5.000.000	34.951.400	39.951.400	39.951.400	39.951.400	39.951.400	39.951.400	39.951.400	118.854.200
	4층이상	75	117.122.729	290.544.271	-	407.667.000	5.000.000	35.766.700	40.766.700	40.766.700	40.766.700	40.766.700	40.766.700	40.766.700	122.390.100
합 계															

III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약신평가)		45	59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3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2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2	3
	장애인	1	3	4
	중소기업 근로자	1	2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	12	17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21	3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3	5
생애최초 특별공급		5	11	16
합 계		27	56	8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 03. 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상자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 03. 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 rowspan="2">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통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 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사)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I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대상자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충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선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외2 나목)
※ 2024. 03. 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외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외1)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월가구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분류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 11. 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선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선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V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감리회사 현황 / 보증관련 유의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웅산주공아파트 재건축저비사업조합	(주)한화 건설부문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중앙2로 15, 2층 (호암동)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청교동)	
법인등록번호	151171-0005833	110111-0002959	
■ 감리자 및 감리 금액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정림씨엔건축사사무소	(주)하나종합테크	(주)우성엔지니어링
감리금액	3,842,755,400	820,032,470	906,400,000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보증)를 통한 아파트이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한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22024-101-0001700 호	₩44,980,399,8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통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건물주체 위치 안내 : 충주시 호암동 1264 ■ 현장 위치 안내 : 충주시 호암동 193-2번지 일원 ■ 분양문의 : 043-845-1260
■ 홈페이지 주소 : 한화포레나충주호암.com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위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물주체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